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1 선고 2023가단67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3. 10. 17.

판결 선고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상자산을 인도하라. 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상자산인 "D"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 피고 B은 2016. 9. 20.

원고에게 남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재테크에 투자한 금액 일금 일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책임짐"이라고 기재된 재테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 B은 2021. 3. 1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21가소228호).¹⁾ 제1심법원은 2021. 9.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1나2477호), 항소심법원은 2022. 5. 12. 일부 청구인용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2.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39094호), 대법원은 2022. 7.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에 따라 항소심판결은 2022. 8. 1. 확정되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선고·확정된 항소심판결을 '관련 판결'로 약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인 "D"를 구입한 다음, 피고들 명의로 개설된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 여전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가상자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관련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맺어진 합의는 일종의 원금보장 약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판결에서는 이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합의 때문에 곧바로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투자 계약의 내용이 변동되거나 그 투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가상자산²⁾이 전부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용남

별지

1) 피고 B은 그 외에도 다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포함시켰으나, 본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소에서의 청구원인과 관계된 사항만을 서술한다.

2) 참고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가상자산 중 'E' 계정에 귀속된 가상자산만이 원고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갑 제2호증).